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6회 정례회 2017. 6. 15.(목)

#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##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#### 3. 제안이유

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,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 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나. 제4조(시험의 이용제한) 규정 삭제
  -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음

#### 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, 법령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[시행 2014.5.23.] [법률 제11794호, 2013.5.22., 전부개정]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, 제2조 등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,
-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4조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4.18.] [법률 제14768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○ 입법예고('17. 4. 21.~'17. 5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  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, 법령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